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 천 광 역 시 의 회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이한구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157

발의연월일 : 2014. 4. .
발 의 자 : 이한구·안병배·김영분 의원
(찬성자 : 4인)

1. 제안이유

가.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상위법령인 「환경영향평가법」이 전부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의 조문변경 등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할 필요가 있고

나. 환경영향평가 위반자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근거를 마련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2. 주요내용

가.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시행 근거를 상위법령에 맞게 조항 변경(안 제1조)

나. 환경영향평가 세부항목을 조정함(안 제2조)

다. 환경영향평가 위반자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

3.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1부.

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부.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제5조”를 “제42조”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환경영향평가의”를 “환경영향평가”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제16조제2항”을 “제2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정요청 등에 관한 사항

제3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제4호 및 제5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재협의 등에 관한 사항

제4조 전단 중 “법 제5조제2항”을 “법 제42조제3항”으로, “의견수렴과”를 “의견수렴,”로, “협의내용의 관리 등 평가절차”를 “협의 내용의 관리”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 제23조, 제24조, 제27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 제52조, 제60조 및 제66조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 제19조제5항,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은 각각 “인천광역시장”으로 본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과태료) ①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7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

2.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자
3.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53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
4.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53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과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3.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4.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준공 또는 중지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5.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6.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53조제2항제3호 또는 제56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 3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부과・징수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작성 또는 협의 요청하거나 재협의의 절차가 진행 중인 평가서는 이 조례에 따라 작성 또는 협의 요청하거나 재협의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본다.

[별표 1]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 요청시기(제2조제1항 관련)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
1.도시의 개발	가.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12만5천㎡ 이상 25만㎡ 미만인 사업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관한 사업 1) 유통업무설비로서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 2) 주차장시설로서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것 3) 시장(市場)으로서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것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다.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사업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라. 「택지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또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전 또는 「보금자리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지구계획의 승인 전
	마.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사업	「유통산업발전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공동집배송센터의 지정 전
	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여객자동차터미널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사업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8조제1항에 따른 공사시행의 인가 전
	사.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또는 제9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개발사업 또는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10만㎡ 이상 20만㎡ 미만인 사업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 또는 제28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승인 전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
2.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사업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제18조의2, 제19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사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전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로서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사업. 다만, 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또는 같은 호 마목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여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공장을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공장설립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는 승인 및 입주계약 등의 완료 전
	라.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중 공업용지조성사업의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사업	「도시개발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마.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산업기술단지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7만5천㎡ 이상 15만㎡ 미만인 사업. 다만, 산업기술단지를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도시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거나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종합개발지구로 개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을 받고 산업기술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설계를 완료하기 전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
3. 에너지 개발	가. 「광업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광업 중 에너지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으로서 채광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사업 나. 「송유관안전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송유관중 저유시설의 설치공사로서 저장용량이 5만㎘ 이상 10만㎘ 미만인 사업 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5조·제9조 및 제10조에 따른 석유사업자의 저유시설 또는 「한국석유공사법」 제1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석유비축시설의 설치공사 중 저장용량이 5만㎘ 이상 10만㎘ 미만인 사업. 다만,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한 공장용지에 설치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광업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 전 「송유관안전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인가 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위험물시설의 설치 허가 전
4. 도로의 건설	「도로법」 제2조제1호, 제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도로의 건설사업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3㎞ 이상 4㎞ 미만의 신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에서는 폭 25m 이상의 도로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다만, 「도로법」 제8조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나목·바목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및 지하도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2차로 이상으로서 5㎞ 이상 10㎞ 미만의 확장	가) 「도로법」 제20조에 따른 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전 나) 「도로법」 제2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공사 시행의 허가 전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으로 건설하는 경우 :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
5.하천의 이용 및 개발	다음의 구역에서 하는 「하천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천공사 중 그 공사구간이 하천 중심 길이로 5㎞ 이상 10㎞ 미만인 사업 1)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 2) 「하천법」 제12조에 따른 홍수관리구역	가)「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시행하는 경우 : 「하천법」 제27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계획의 수립 전 나)「하천법」 제8조에 따른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가 시행하는 경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 「하천법」 제6조에 따른 협의 또는 승인 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의 경우 :「하천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관계기관의 장과의 협의 전 다)「하천법」 제87조에 따른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경우 : 하천관리위원회의 심의 전
6.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	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매립사업 중 사업면적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1) 「항만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정항만 및 「신항만건설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항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4호에 따른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1만5천㎡ 이상 3만㎡ 미만인 사업 2) 그 밖의 지역에서의 매립사업인 경우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사업 나.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다목에 따른 간척사업 또는 개간사업 중 사업면적이 50만㎡ 이상 100만㎡ 미만인 사업	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매립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35조제1항에 따른 매립의 협의 또는 승인 전 나) 그 밖의 자가 매립하는 경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매립면허 전 「농어촌정비법」 제9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전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
7.관광단지의 개발	가. 「관광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관광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	「관광진흥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등록 전(관광숙박업은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5조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관광사업의 허가 또는 신고 전
	나.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승인 전
	다. 「온천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에서의 온천개발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	「온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온천개발계획의 승인 전
8.산지의 개발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서 시행되는 사업으로서 산지전용면적이 10만㎡ 이상 20만㎡미만인 사업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전,「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사업(임도의 설치를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동법 제49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전
9.특정지역의 개발	1호부터 8호까지, 10호부터 12호까지 사업 중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사업으로서「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시행되는 사업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전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
10.체육시설의 설치	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설치공사 중 사업면적이 12만5천㎡ 이상 25만㎡ 미만인 것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경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전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전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시설의 설치 전
	나. 「경륜·경정법」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경륜 또는 경정 시설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12만5천㎡ 이상 25만㎡ 미만인 것	「경륜·경정법」 제5조제1항에 따른 허가 전
	다.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 전 나)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설치하는 경우 : 같은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허가 전
	라.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7조제1항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의 조성사업 중 사업면적이 15만㎡ 이상 30만㎡ 미만인 것	「청소년활동진흥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청소년수련지구조성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 전
	마.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의 설치사업 중 사업면적이 12만5천㎡ 이상 25만㎡ 미만인 것	「한국마사회법」 제4조에 따른 경마장 설치 허가 전
11.폐기물처리시설 및 분뇨처리시설의 설치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의 중간처분시설 중 소각시설로서 처리능력이 1일 50톤 이상 100톤 미만인 것	가)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사업계획서의 적합 통보 전 나)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외의 자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전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전

구 분	대상사업의 범위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
12.토석·모래·자갈·광물 등의 채취	가.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산지에서 토석·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서 산지훼손면적이 5만㎡ 이상 10만㎡ 미만인 것	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사업(임도의 설치는 제외한다)인 경우 : 같은 법 제49조제2호에 따른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 전 나) 위 가)외의 지역에서의 사업인 경우 (1) 광물채광의 경우: 「광업법」제42조제1항에 따른 채광계획의 인가 전 (2) 토석채취의 경우 :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전 또는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전
	나. 해안(해안선으로부터 육지 쪽으로 1㎞ 이내의 지역과 바다 쪽으로 10㎞ 이내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광업법」에 의한 광물을 채취하는 경우로서 「광업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광구의 단위구역당 광물채취면적이 1만5천㎡ 이상 3만㎡ 미만인 경우. 다만, 태풍·폭풍·해일 등 자연현상으로 인한 긴급 대책 상 필요하거나 항만 및 어장의 유지·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다.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또는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또는 협의·승인 전
	다.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라 해안에서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로서 「광업법」 제13조에 따른 한 광구의 단위구역 당 채취면적이 12만5천㎡ 이상 25만㎡ 미만 이거나 채취량이 25만㎥ 이상 50만㎥ 미만인 것	「골재채취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재채취의 허가 전

<비고>

1.「대상사업의 범위」중 사업규모는 평가서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 시기란 중 승인등을 받고자 하는 사업의 규모를 말한다.

2. 다른 법령에 따라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의제되는 사업으로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본다.

3. 하나의 사업이 둘 이상의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되는 경우 최소사업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평가서의 제출시기 또는 협의 요청시기는 가장 먼저 승인등을 받고자 하는 시기로 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 전체에 대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가. 같은 사업자가 같은 영향권역에서 같은 종류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각 사업 규모의 합이 평가대상규모에 달한 때(위 표 제4호의 도로건설사업 경우에는 준공된 사업은 제외한다)

나. 사업 승인등의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나 평가대상 규모 미만이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이 같은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에 이르거나, 해당 사업규모가 신규로 승인등이 된 사업규모와의 합이 평가대상규모에 이른 때. 다만, 사업의 인가·허가·승인 등이 이루어진 후에 별표 1의 개정으로 평가대상규모의 기준이 강화된 경우로서 그 개정당시에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같은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15퍼센트 이상이거나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때

다. 사업의 승인등의 당시에 평가대상사업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영향평가

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1) 사업의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별표 1의 개정으로 평가대상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으로서 그 개정당시에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대상 규모 미만에 해당하는 사업이 같은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으로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에 이르거나 해당 사업규모가 신규로 허가 등이 된 사업규모와의 합이 평가대상규모에 이른 때

2) 사업의 승인등이 이루어진 후 별표 1의 개정으로 평가대상 사업에 해당하게 된 사업으로서 그 개정당시 해당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대상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이 같은 영향권역에서 사업계획의 변경 또는 신규허가 등으로 증가되는 사업의 규모가 해당 사업의 승인등의 당시 규모보다 15퍼센트 이상이거나 증가되는 사업규모가 평가대상규모 이상인 때

5. 이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사업으로서 사업계획 등의 변경으로 인하여 전체 사업규모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규모에 달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다.

[별표 2]

환경영향평가 세부항목(제2조제2항 관련)

1. 대기환경 분야

가. 기상

나. 대기질

다. 악취

라. 온실가스

2. 수환경 분야

가. 수질(지표·지하)

나. 수리·수문

다. 해양환경

3. 토지환경 분야

가. 토지이용

나. 토양

다. 지형·지질

4. 자연생태환경 분야

가. 동·식물상

나. 자연환경자산

5. 생활환경 분야

가. 친환경적 자원 순환

나. 소음·진동

다. 위락·경관

라. 위생·공중보건

마. 전파장해

바. 일조장해

6. 사회·경제환경 분야

가. 인구

나. 주거(이주의 경우를 포함한다)

다. 산업

[별표 3]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 부과기준

(제5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할 때 하나의 위반행위가 둘 이상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가장 많은 금액만을 부과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 횟수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최초로 과태료를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적발한 날을 각각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다. 과태료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를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위반행위가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위반행위를 바로 정정하거나 시정하여 해소하는 경우

2. 개별기준

(단위: 만원)

부과대상	근거	과태료 금액		
		1차	2차	3차 이상
가. 제2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	조례 제5조제2항제1호	300	400	500
나. 조례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자	조례 제5조제2항제2호	300	400	500
다. 조례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조례 제5조제1항	500	700	1,000
라. 조례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	조례 제5조제4항제1호	100	150	200
마. 조례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5조 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조례 제5조제4항제2호	100	150	200
바. 조례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6조제1항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지 아니한 자	조례 제5조제3항제1호			
1) 전부 실시하지 아니한 자		300	300	300
2) 일부 실시하지 아니한 자		100	150	200
사. 조례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조례 제5조제4항제3호	100	150	200
아. 조례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6조제	조례 제5조제3항제2호	300	400	500

2항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자. 조례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준공 또는 중지를 통보 하지 아니한 자	조례 제5조제4항제4호	100	150	200
차. 조례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조례 제5조제4항제5호	100	150	200
카. 조례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조례 제5조제2항제3호	300	500	700
타. 조례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조례 제5조제2항제4호	300	500	700
파. 조례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53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	조례 제5조제3항제3호	300	400	500
하. 조례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53조제2항제3호 또는 제56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조례 제5조제4항제6호	100	150	200
거. 조례 제4조에 따라 법제53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과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	조례 제5조제3항제4호	300	400	500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를 정하는 등 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제42조----------.
제2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등) ① (생 략) ② 제1항에 따른 대상사업의 분야별 환경영향평가의 세부항목은 별표 2와 같다.	제2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환경영향평가-- ----------.
제3조(환경영향평가심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3조(환경영향평가심의) ----------.
1. 「환경영향평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제2항에 따라 제출된 환경영향평가서에 관한 사항	1. ---------- 제27조제2항----------
2.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조정요청 등에 관한 사항
<신 설>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제출

	된 재협의 등에 관한 사항
3. (생 략)	4. (현행 제3호와 같음)
4. (생 략)	5. (현행 제4조와 같음)
제4조(환경영향평가법과의 관계)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의견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내용의 관리 등 평가절차 등에 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법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 제12조, 제15조부터 제30조까지, 제32조 및 제45조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23조,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제32조 및 제34조 중 "환경부장관"은 각각 "시장"으로 본다.	제4조(환경영향평가법과의 관계) 법 제42조제3항---------- ---------- 의견수렴,- -- ---------- 협의 내용의 관리--------- ------- ---------- ---. 이 경우 법 제8조, 제23조, 제24조, 제27조부터 제41조까지, 제51조, 제52조, 제60조 및 제66조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제19조제3항, 제19조제5항,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8호서식 중 "환경부장관"은 각각 "인천광역시장"으로 본다.
<신 설>	제5조(과태료) ①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4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7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2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

	영향평가를 거치지 아니하고 공사를 한 자 2.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4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협의 절차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한 자 3.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40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조치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6조제2항을 위반하여 통보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53조제2항제2호 또는 제56조

	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를 부실하게 작성한 자 4.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53조제2항제4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대행계약을 해당 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과 분리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사업자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5조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대장을 갖추어 두지 아니하거나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기록하지 아니한 자 2.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거나 지정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3.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4.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7조를 위반하여 사업의 착공·준공 또는 중지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5.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38조제2항을 위반하여 협의 내용의 이행 상황과 승계 사유 등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6. 제4조에 따라 준용하는 법 제53조제2항제3호 또는 제56조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서와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⑤ 제1항부터 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별표 3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 부과·징수한다. ⑥ 제5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는「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

관계법령 발췌사항

관계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 제42조(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 제58조(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 지방자치법 ○ 제22조(조례) ○ 제27조(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세부내용 별지 작성”
관련조례 정비대상	
관련자료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안건번호 09-0315(2009.6.15.) ○ 조례로 과태료를 정할 수 있는지?(환경영향평가법 제5조 관련)

관계법령 발췌사항

□ 환경영향평가법

제42조(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시(이하 "시·도"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역 특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하여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43조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의 환경영향평가 분야 및 세부 항목,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및 의견 수렴과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 및 협의 내용의 관리 등의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8조(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의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규모의 사업
2.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의 50퍼센트 미만인 규모의 사업 또는 별표 3에 따른 대상사업 외의 사업으로서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관할구역에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는 제외한다)·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 시장이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범위의 사업

▢ 지방자치법

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제27조(조례위반에 대한 과태료) ①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그 관할 구역 안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안건번호 09-0135 2009.6.15.)

1. 질의요지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로 과태료를 정할 수 있는지?

2. 회답

「환경영향평가법」제5조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로 과태료를 정할 수 있음

3. 이유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에서 과태료 부과원인과 관련된 사항을 조례로 위임하면서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하지 않은 경우 조례로 과태료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시·도의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그 과태료 부과원인과 관련된 사항만이고 명시적으로 과태료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조례로써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제27조의 취지와 주민의 권리 제한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은 포괄적인 것으

로 충분하다는 점, 자치입법인 조례 역시 자기완결성을 갖추기 위하여 과태료와 같은 실효성 확보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법률에서 별도로 과태료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위임한 경우뿐만 아니라, 법률에서 과태료 부과원인이 되는 의무의 부과를 조례로 위임한 경우에도 그 의무를 위반한 경우의 과태료를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법제처 2008. 12. 2. 회신 08-0340 해석례).

따라서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에서 과태료 부과원인이 되는 의무의 부과를 시·도의 조례에 위임한 이상 그 의무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환경영향평가법」 제5조에 따라 제정되는 조례로 과태료를 정할 수 있습니다.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인천광역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3조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 환경정책위원회에 참석하는 전문가에 대해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환경영향평가 업무수행으로는 사업대상지 현지확인, 관련회의 참석에 따른 여비 등의 심의(협의)활동에 따른 여비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 제1호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3. 미첨부 사유

○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환경정책위원회 운영 및 현지확인 등을 위한 수당 및 여비의 실비가 연간 12회(월 1회) 이하로 예상되며 기존 예산으로 가능

4. 작성자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장 류치현